

자본시장 개방이 동물병원업계에 미치는 영향

홍 하 일

「외국인 투자 개방 동물병원도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 1월 1일부로 수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개방된다는 내용의 수의계 뉴스가 지난 93년 6월호 대한수의사회지에 게재되었다. 이제 그 개장시점을 맞아 학술·홍보위원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개방이 어떤 의미이며, 우리 수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자본시장 개방이란?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인 외자도입법은 1960년 제정된 「외자도입촉진법」을 그 기초로 하여 1966년 외국인 투자, 기술도입, 상업차관 등에 관계하는 「외자관리법」과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흡수하여 제정된 법으로 외국자본유치에 의한 1. 자본축적의 효과, 2. 경제성장의 효과, 3.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 외국인이 국내에 자본을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대외송금보장 및 외국인 투자재산의 보장 등과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입허가의 생략 등 각종 특별법상의 규제완화 및 상법에 대한 특례조치 등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입

법초기에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많이 고려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정책(투자금지 및 제한업종의 철폐 또는 축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투자정책 및 제도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확실한 투자환경을 축소, 분쟁의 소지를 최소한 줄이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보다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및 의무의 축소를 통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에서 외국인이란 외국 국적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의 법인과 경제협력기구 등도 외국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의 대상은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과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상업종도 국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투자허용업종과 투자금지업종 그리고 투자시 주무부서의 규제를 받는 제한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수의업은 그동안 제한업종으로 규제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 국내의 수의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려면 기존의 법인형태 동물병원이거나 새로 법인형태로 동물병원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투자가 외국의 수의사 면허를 가졌다하더라도 국내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상에서 수의업의 외국인 투자허용의 근거가 되는 외자도입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 우리종합동물병원

자본시장개방이 수의업계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과 수의업계의 서비스 향상

다음은 외국인 투자허용이 수의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95년 1월 1일을 기해 수의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외자도입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동물병원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외국자본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의 형태로만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법인형태의 동물병원이 없었던 우리 수의계에서는 이제는 합법적으로 경영권과 진료권이 분리된 새로운 형태의 동물병원의 등장이 예상된다. 의료계를 보건데, 의료시장의 성장과 같이하여 자연스럽게 경영과 진료가 분리되었고(70년대), 전문경영자의 등장 이후 급속하게 성장되었으며, 의료서비스 질도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수의업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자본의 도입과 아울러 전문경영기법의 도입과 진료서비스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수의업계에 외국자본진출 가능성과 그 형태는?

그렇다면 수의업계에 외국자본 전출가능성은 어떠한가?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하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자본의 투자여부는 단기간에 투자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시장이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기간의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앞으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국내 동물병원시장도 충분히 외국자본의 투자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국내 동물병원시장은 소동물병원의 경우, 지금은 다른 업종에 비해 미미할지 모르지만, 모두들 인정하고 있듯이 국민소득증가와 비례하여 성장하며, 한 외국투자가의 말처럼 앞으로 10년안에 100배이상 커질 수 있는 전망이 밝은 업종중의 하나이다. 일례로 88년도에 수입과 생산이 전무였던 애견사료시장이 93년에는 5,000톤의 수입과 국내생산 15,000톤이라는 성장을 이루었으며 계

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대동물의 경우 세계식량농업기국의 통계에 의하면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의 경제적 손실이 축산 총생산액의 22%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질병으로 인한 연간손실액은 약 8천억원에 이른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곧 대동물병원의 시장규모를 반영한다. 또한 우리나라 동물병원은 대동물과 소동물 공히 그 규모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의 동물병원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미약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내 동물병원업계의 시장잠재력과 국내경쟁력 부재는 경영에 대해 오랜 경험이 있는 외국의 동물약품 제약회사나 사료회사,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동물병원법인 그리고 경영에 노하우가 많고 자본이 있는 수의사 등이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사료된다.

자본시장 개방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무튼 국내의 동물병원업계에서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소리가 높지만 이번 외국인 투자개방을 계기로 동물병원업계도 경영권과 진료권이 분리된다면 어떤 형태이든지 동물병원의 서비스 개선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동물병원의 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이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동물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선은 제공되는 개개 서비스의 질향상과 서비스의 명확성과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개개의 서비스의 질향상은 「바람직하며 달성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설정하고 실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평가하여 이 결과를 기반으로 소기의 목표달성을 위한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지향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동물병원이 소비자 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진료서비스의 개선이외에 병원경영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경영인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번 외국인 투자허용은 이러한 측면에서 동물병원의 서

비스 개선이라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물병원 서비스의 개선을 제공되는 서비스의 명확성과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국내의 동물진료업은 아직 자체적으로 그 업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투자로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병원의 업무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거나 폐수검안을 행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반면, 수요자의 욕구는 토탈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어 동물병원에 대한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다. 즉, 소동물병원인 경우 그 대상동물인 반려동물(애완동물)의 복지에 필요한 모든 것(예를 들면 영양, 미용, 보관, 훈련, 번식, 장례, 선택(매매) 등)을, 대동물인 경우에는 질병이 외에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에 대한 통제 및 조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에 의한 병원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동물병원은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그러나 이렇게 확대된 업무영역을 수용하여 동물병원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갈 때 반드시 분쟁이 발생할 것이며,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수의업무에 대한 명확성과 이를 근거해주는 최소한의 법규가 필요한데 현재의 수의법규만으로는 미비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외국의 일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가가 개인병원을 흡수하여 수의사를 고용관계에 맺고, 병원에 제공되는 약품이나 사료 그리고 기타 소모품의 공급권을 독점함으로써 동물병원의 업무가 왜곡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자유경쟁주의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용납될지 모르지만 생명을 다루고 공중위생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수의업의 특성상 이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는 통제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궤도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물병원 진료의 범위를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명확한 구분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동물병원에서는 사료를 판매할 수 있다/없다 등). 이는 기존의 국내동물병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동물병원업계에 대한 외국의 자본투자를 외자도입법 본래의 목적대로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자본시장개방으로 인해 동물병원의 법인화는 가속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서비스 개선의 가속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법인화로 인해 경영권과 진료권의 분리될 때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자본에 의한 진료권의 예속이다.

면허제도에 의해 수의업은 전문직종으로 수의사법에 의해 그 업무를 보호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경영권과 진료권(전문권)이 일치되고 있는 현재에는 별문제가 없겠으나, 경영권과 진료권이 분리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앞에서 언급한데로 진료업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와 더불어 자본에 의한 진료권의 예속 즉, 종속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상정해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애완동물 매매업이나 미용업 등의 경영자가 토탈마케팅이라는 이름아래 불법적으로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재에도, 내국인에 의한 투자인 경우에도 별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외면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고용의 관계에 있는 수의사들은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의사법 제 15조(진료기술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로 인해, 고유의 진료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진료권을 포기한 수의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진료권에 대한 좀더 명확한 보호장치가 없는 한 이런 수의사의 양상은 자명한 일이며, 결과적으로 수의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조치이건 수의사회의 내규에 의해서건 수의사의 윤리 및 진료규정과 그 처벌조항을 명확하게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시행령에는 병원 등의 개설조건이 안되는

자에게 고용하여 병원 등을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면허증 대여 또는 품위손상에 해당되어 징역, 벌금 또는 자격정지 등의 별칙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진료권의 침해나 남용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진료업무를 감시, 감독하여 과잉진료나 의료사고 등을 예방 또는 대처하고 있다. 수의계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료 감사기준 마련 즉, 진료업무의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의료기사법 제 13조의 4 제 1항 :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과 별도로 안경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업소를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제 12조의 1 제 3 항과 동법 제 13조의 1 제 1항에 의거 면허증을 대여 또는 품위손상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 15조의 별칙규정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같은 법 제 13조에 의거 자격정지를 받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의업의 자본시장개방은 우리 수의계의 앞날에 밝은 면도 있으며,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같은 시기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의료계와 약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투자개방에 대비하여 대책마련을 위한 학회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왔다. 그 결과 두 업계 공통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의한 경쟁력 강화라는 대책이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병원의 대형화, 의원급에서의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약사회에서는 법인설립의 반대, 시설기준 강화, 서비스 개선이라는 결론이외에 내부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에게 고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책을 마련중이라 한다. 그러나 벌써 의료계나 약업계의 경우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시장조사를 실시하고 투자를 준비하고 있으며, 주로 체인점(프랜차이즈) 형태로 한국시장에 진출할 것이라 한다. 먼저 투자가 개방된 소매점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외국인 투자허용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우리의 대처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외국인 투자허용에 대해 수의계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1) 확장된 진료영역의 수용과 진료업무의 표준화
- 2) 동물병원 시설기준 강화

참고 : 의료법; 제 30조 제 3항; 병원과 기타 영업권의 확실한 분리

- 3) 외국자본 이외의 자금확보방안 제시
- 4) 수의 윤리 및 진료규정과 그 처벌기준 강화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